

『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·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제1장 총칙(안 제1조부터 제3조)

이 조례의 목적 및 시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.

- 제2장 담배소비세(안 제4조부터 제5조)

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,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
판매업자의 장부비치·보존 의무기간을 정함

- 제3장 주민세(안 제6조부터 제8조)

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함

- 제4장 지방소득세(안 제9조부터 제11조)

지방소득세 세율 및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함

- 제5장 재산세(안 제12조부터 제23조)

재산세 세율을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1천분의
1.4로 규정하며,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함

- 제6장 자동차세(안 제24조부터 제25조)

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
자동차세 납부확인 사항을 규정함

-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

- 경상북도 세정과-14559(‘10.9.29)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 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표준안」에 따라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·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,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장부비치·보존 의무기간을 정하고
-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비율과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재산세 세율 및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1천분의 1.4로 정하고, 자동차세 세율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확인 사항을 규정하고,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에는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